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합22157 판결 [건물 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

담당변호사 이동원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28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6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2. 23.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신명희

판사강상우

판사김윤서

별지

1)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24. 10. 23.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철회서의 진술로써
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최종 확정하였다.